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15,790,911,081좌 중 1,272,101,912좌(8.056%) 가 참석하였으며,

1,272,101,912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24,433,989,450 좌 중 142,414,504좌(0.583%) 가 참석하였으며,

142,414,504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1.펀드명: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35,994,487,293 좌 중 9,645,408좌 (0.027%) 가 참석하였으며 9,645,408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더블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더블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8,358,853,852 좌 중 223,043,684좌(2.668%) 가 참석하였으며, 223,043,684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263,273,865,532 좌 중 3,232,404,009좌(1.228%) 가 참석하였으며, 3,232,404,009좌 참석수익자수의 97.51%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208,298,195 좌 중 14,083,000좌(6.761%) 가 참석하였으며, 14,083,000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릭스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릭스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48,417,596,569 좌 중 7,951,184좌(0.016%) 가 참석하였으며, 7,951,184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아시아5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아시아50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24,638,357,238 좌 중 153,002,187좌(0.621%) 가 참석하였으며,
153,002,187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지니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지니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141,198,188,386좌 중 1,719,401,732좌(1.218%) 가 참석하였으며,
1,719,401,732좌 참석수익자수의 99.83%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펀드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제 190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190조 제8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25,016,660,930 좌 중 344,238,108좌(1.376%) 가 참석하였으며,
344,238,108좌 참석수익자수의 99.8%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글로벌테마 혼합주식투자신탁 자 1호

1.펀드명: 도이치 글로벌테마 혼합주식투자신탁 자 1호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

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560,794,517 좌 중 14,858,904좌(2.650%) 가 참석하였으며, 14,858,904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주식혼합투자신탁 자 1호-FS

1.펀드명: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주식혼합투자신탁 자 1호-FS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757,032,726 좌 중 16,147,150좌(2.133%) 가 참석하였으며, 16,147,150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

1.펀드명: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1,658,902,114 좌 중 311,202,977좌(18.76%) 가 참석하였으며, 311,202,977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FS

1.펀드명: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FS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142,595,420 좌 중22,718,401좌(15.932%) 가 참석하였으며,
22,718,401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

1.펀드명: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8,800,139,936 좌 중 1,436,669,136좌(16.326%) 가 참석하였으며,
1,436,669,136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

[연기수익자총회 의결내용]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2호

1.펀드명: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2호

2.총회일자: 2009년 07월 15일

3.의안내용: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

4.의결결과 : 2009년 07월 01일 개최된 수익자총회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 수를 보유 하는 수익자의 출석)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07월 15일 연기 수익자 총회를 개최함. 동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었으며,
참석한 좌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안이 가결됨.

(총발행수량 5,208,022,108 좌 중 26,980,872좌(0.518%) 가 참석하였으며,
26,980,872좌 참석수익자수의 100%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됨)